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147
----------	------------

제안일자 : 2021년 2월 26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안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위법과 같이 일치시키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시장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함(안 제5조제1항).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구축·운영하여야 하며”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p> <p>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 난 예보·경보시스템을 <u>구축·운영하 여야 하며</u>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 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p> <p>②~⑤ 생략</p>	<p>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p> <p>① ----- ----- <u>구축·운영할 수 있으며</u> ----- ----- -----.</p> <p>②~⑤ (조례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②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 ③ 이 조례에서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제3조(시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이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발생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방송사
2. 개인용 무선단말기
3. 문자 전광판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④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갱신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경보시스템의 종류 등을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 또는 자치구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간에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점검·관리

3.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관리·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인지한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여 인지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관리주체는 유사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지원) 시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정보 제공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